

<자료 5>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I. 조사기획개요

1. 조사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포함될 내용과 직제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사, 반영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295개 인권·시민단체

- (1)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3) 인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3. 조사방법 :

- (1) 설문지를 작성하여 Fax와 E-mail로 조사대상자에게 송부
- (2) 회수된 응답지(47부 : 회수율 15.9%)의 응답빈도분석

4. 조사설문 : 9개 항목, 32개 세부항목

다수인보호시설의 종류와 판단기준(5개 항목)

-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2개 항목)
- 시설수용자의 진정서작성(2개 항목)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17개 항목)
-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2개 항목)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설립일(2001.11.25)에 설립되지 못할 상황에 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정부의 논란에 대한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 기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제안

5. 조사기간 : 2001. 9.14 ~ 9.28

II. 조사결과분석 요약

1. 다수인보호시설

1-1, 2, 3 시설종류

(1) 예시된 시설(12종)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다수인보호 시설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설문 1-1>에 47인의 응답자중 “없다”라는 응답자가 21인(44.7%)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무응답이 17인(36.2%), “있다”가 9인(19.1%)이었다.

(2) “있다” 응답이 지적한 시설의 빈도를 순위별로 보면, 1순위가 ④ 모자복지 시설로서 5번 지적되었고, 2순위는 ⑨ 가정폭력보호시설과 ⑫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⑦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로서 각 3번, 3순위는 ⑧ 청소년보호시설 ⑩ 외국인보호실로서 각 2번 지적되었다.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문 1-2>에 가

장 많은 응답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3) <설문1-1>에서 예시된 내용의외 다수인보호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설문 1-3>에 응답자 20인(42.6%) 중 가장 많이 지적한 시설은 교아원으로서 7번 지적되었다. 그 외 2순위는 이주노동자 관련시설, 부랑인보호시설(각 5번 지적), 3순위는 윤락여성보호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양로원, 기도원(각 4번 지적), 4순위는 교도소, 노숙자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정신병원, 청소년 보호시설(각 3번 지적), 5순위는 군대, 병원(각 2번 지적)이었다. 그외 20종의 다양한 시설이 1번씩 지적되었다.

1-4, 5 시설여부 판단기준

(4) 위 내용 이외,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 1-4>에 응답자는 15인(31.9%)이었고, “2인 이상의 사람이 수용된 장소로서 공간적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자 또는 관리자의 사실상 지휘와 관리를 받으며 수용자가 그 영향권내에 있을 경우(보호·수용된 기간이나 시간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일시적 체류 및 거처로 제공되는 곳 등도 이에 해당함). 시설 수용자의 의사전달, 왕래 및 행동에 있어서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집단에 수용된 경우”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국가기관 뿐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데 의견이 대체로 일치되었다.

2.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2-1, 2 효율적 방문조사방법과 절차

(1) 예시된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방문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담아야 할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써 주시라는 <설문2-1>에 가장 많은 응답은 “ ③ 면담한 수용자나 시설의 직원이 면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받지 않을 권리 명시”이었다. 그외 2순위는 “ ②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 방해 금지”, 3순위는 “④ 수용자 및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제반 자료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 명시”, 4순위는 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 내 면담장소 제공”, 5순위는 “⑤ 수용자 및 시설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시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등 조사기록의 작성과 보관”이었다.

(2) 위 내용 이외에 효율적인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설문 2-2>에 응답자 30인(63.8%) 중 가장 많은 11인이 ‘사전예고 없는 방문조사’를 지적하였다. 그 외 2순위는 ‘조사관의 수용자 직접 면담(직원 입회 불허)’ (5인), 3순위는 조사거부시 제재조치(3인)이었고 4순위는 ‘관계단체, 전문가의 동행’, ‘피조사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제재’ (각 2인)이었다.

3.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3-1, 2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보장방법

(1) 예시된 내용 중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담아야 할 내용 중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써주시라는 <설문3-1>에 응답 1순위는 “ ⑤ 진정의 내용에 대한 비밀권 보장”이었다. 그 외 2순위는 “⑥ 위원회가 방문하여 진정 접수한 경우 진정인과 관계자의 신체·시설 및 관련 물건 조사 및 관계자 면담 보장”, 3순위는 “② 시설 내에 설치된 전화나 팩스로 수용자가 진정 또는 상담”, 4순위는 “③ 신입수용자에게 진정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시설의 장이 고지할 의무조항”, 5순위는 “① 시설 내 진정함 설치 및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편의 보장”, 6

순위는 “④ 시설의 장은 매일 지정된 시각에 수용자의 진정이 있는지 여부 확인 하여 위원회 송부” 순이었다.

(2) 위 내용 이외에 혹은 위 내용들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설문 3-2> 에 응답 1위는 응답자 31인(66.0%) 중 14인이 제시한 ‘수용자의 자유접견통신허용’(E-MAIL, 진정서 열람제한, 핫라인 전화)이었다. 2순위는 ‘시설관계자의 자유진정권 침해시 제재’ (5인 응답), 3순위는 ‘진정서 작성을 위한 공간 마련’(3인 응답), 4순위는 ‘수용자에 대한 진정권에 관한 고지, 가족과 지인의 진정대리’ (각 2인 응답)이었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4-1 사무처의 조직과 인원

위원회가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의 연구, 조사, 정책협의를 통한 인권상황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는 어떤 조직과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4-1>에 응답자 25인(53.2%)이 한 응답 중 1순위는 ‘시민단체인권활동가의 직원채용’(9인 응답)이었다. 그 외, 2순위는 ‘연구·교육부서와 전문인력 확보’(5인 응답), 3순위는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부서/협의체 설치(3인 응답)이었다.

4-2 인권연구와 교육, 홍보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직제

위원회의 인권교육과 홍보기능, 이를 위하여 교육부, 행자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4-2>에 응답자 24인(51.1%)이 한 응답 중 11인이 제시한 '인권시민단체의 연구교육활동경험자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2순위는 '인력의 전문성'(6인), 3순위는 '교육원의 설치'(2인)이었다.

4-3 인권침해와 차별의 조사·구제

4.3.1 진정대상 인권침해의 유형

위원회에 가장 많이 제기될 인권침해의 유형은 어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설문4-3-1>에 응답자 30인(63.8%)의 응답 중 1순위는 '수사기관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12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성차별·성희롱'(6인), 3순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4인 응답), 4순위는 '장애자 인권침해 및 차별' '군대폭력' '성폭력'/'폭력행위' (각 3인 응답)이었다.

4-3-2 진정대상 국가기관

위원회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진정들은 주로 어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설문 4-3-2 >에 응답자 28인(59.6%)이 지정한 응답중 1순위는 경찰·검찰(20번 지적)이었다.

2순위는 교도소·구치소(9번 지적), 3순위는 법무부(7번 지적), 4순위는 국정원/ 국방부·군당국(6번 지적), 5순위는 행자부/ 노동부(4번 지적), 6순위는 법원(3번 지적), 7순위는 정보통신부/ 구청등 지방자치단체(2번 지적)이었다. 그외 여성부/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수용소각 각 1번 지적되었다.

4-3-3 진정대상 국가기관의 예상대응태도

위원회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상대방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공무원들은 어떤 태도로 대응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라는 <설문 4-3-3 >에 응답자 33인(70.2%)의 응답중 1순위는 '② 형식적으로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19인 지적)이었다. 2순위는 '④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12인), 3순위는 '③ 조사에 가능한 한 응하지 않으려 하되, 조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2인 지적)이었다.

4-3-4 진정대상 국가기관의 협조여부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위원회의 조사에 가장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과 가장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라는 <설문4-3-4 >에 협조할 것으로 보이는 기관의 1순위는 '여성부' 라는 응답과 '없다'라는 응답이었고(4인 응답), 2순위는 지자체/ 경찰(2인 응답)이었다.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관의 1순위는 '검찰·경찰'(17인 지적)이며, 2순위는 국정원(10인 응답), 3순위는 법무부(9인 응답), 4순위는 국방부·군당국(6인 응답), 5순위는 행자부 / 교도소(각 2인응답)이었다. 그 외 지자체/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무사가 각 1번 지적되었다.

4-3-5 진정대상 차별행위의 유형

위원회에 제기될 차별행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어떤 종류의 차별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4-3-5>에 응답자 20인(42.5 %)의 응답중 1순위는 성차별(12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장애인 차별(5인 응답), 3순위는 경제력에 의한 차별 / 학력 / 인종·국적차별(각 4인 응답), 4순위는 출신지역(각 2인 응답)이었다. 기타 '성적 지향 / 사회적 신분/ 연령'이 각 1번 지적되었다.

4-3-6 진정대상 차별행위의 행위자

위원회에 제기될 차별행위들은 주로 어떤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설문 4-3-6>에 응답자 18인(38.3%)의 응답 중 1순위는 기업(10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행정기관(8인 응답), 3순위는 수용시설(5인 응답), 4순위는 군대(3인 응답)이었다.

4-4 직원의 1년간 적절 진정처리건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원 한 사람이 일년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사건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4-4>에 응답자 30인(63.8%)의 응답중 1순위는 100건(5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20건 또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름(각 3인 응답), 3순위는 1~3건/ 5~6건/ 10건/ 12건(각 2인 응답)이었다.

4-5 1년간 인권침해 진정 예상건수

위원회에 일년간 제기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대략 몇 건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4-5>에 응답자 34인(72.3%)의 응답빈도의 1순위는 '㉔ 5,000건 내지 10,000건' (10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㉕ 50,000건 이상' (9인 응답), 3순위는 '㉑ 5,000건 이하' (7인 응답), 4순위는 '㉓ 10,000건 내지 20,000건/ ㉒ 20,000건 내지 50,000건'(각 4인 응답)이었다.

4-6 1년간 차별행위 진정 예상건수

위원회에 일년간 제기될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대략 몇 건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4-6>에 응답자 33인(70.2%)의 응답빈도가 1순위인 것은

'① 5,000건 이하/ '⑤ 50,000건 이상'(각 9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② 5,000건 내지 10,000건' (6인 응답), 3순위는 '④ 20,000건 내지 50,000건' (5인 응답), 4순위는 '③ 10,000건 내지 20,000건'(4인 응답)이었다.

4-7 진정처리 소요기간

위원회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데 걸리는 적절한 기간의 최대한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설문 4-7>에 응답자 36인(76.6%)의 응답 빈도 1순위는 '① 3개월 이내 / '②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각 16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③ 6개월 이상 9개월 이내' / ④ '9개월 이상 1년 이내'(각 2인 응답)이었다.

4-8 민주적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인권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과 운영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4-8>에 응답자 32인(68.1%)의 응답 빈도 1순위는 국가기관·정치권으로부터 인사, 예산 등 운영의 독립성·자율성(11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정보공개등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5인 응답), 3순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인권전문가·활동기의 참여(각 4인 응답), 4순위는 공정한 인사 / 조사관의 독립성충분한 조사권한(각 2인 응답)이었다.

4-9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업무의 적절수행을 위한 직원 수

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조정 등 구제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략 어느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4-9>에 응답자 37인(78.7%)의 응답 빈도 1순위는 '② 100명 내지 200명 '(10인 응답)이었다. 그외 2순위는 '③ 200명 내지 300명' / '⑥ 500명 이상'

(각 8인 응답), 3순위는 '⑤ 400명 내지 500명' (5인 응답), 4순위는 '④ 300명 내지 400명' (3인 응답), 5순위는 '① 100명 이하' (2인 응답)이었다.

4-10 법제, 정책과 관행의 조사·개선기능 및 인권교육기능의 적절수행을 위한 직원 수

위원회에 법에 정해진 대로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여 개선하는 기능 및 인권교육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 설문4-10>에 응답자 35인(74.5%)의 응답 빈도 1순위는 '① 100명 이하' (15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② 100명 내지 200명' / '③ 200명 내지 300명' (각 7인 응답), 3순위는 '⑤ 400명 내지 500명' (3인 응답), 4순위는 '④ 300명 내지 400명' (2인 응답)이었다.

4-11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진정처리 및 구제업무의 적절수행을 위한 직원 수

2001. 8.현재,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경찰청 유치장, 군 교도소 등)의 수는 414개 (수용인원 148,000명으로 추산)이고, 2001.6.30.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한 다수인보호 시설의 수는 890개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감안할 때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진정 처리 및 구제 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의 숫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 설문4-11>에 응답자 35인(74.5%)의 응답 빈도 1순위는 '200명'이었다(7인 응답). 2순위는 100명(3인 응답), 3순위는 100여명 / 300명 / 500명 / 1,000명 이상 (각 2인 응답)이었다.

4-1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고려사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는 < 설문 4-12>에 응답자 28인(59.6%)의 응

답 빈도 1순위는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 / 인권활동가·전문가의 참여이었다(각 4인 응답). 2순위는 지방조직의 설치(2인 응답)이었다. 그외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다.(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III에 수록)

5.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5-1, 2 설립초기의 우선활동

(1) 예시된 내용 중 위원회가 설립초기에 가장 우선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5-1>에 응답빈도 1순위는 '① 구금·보호시설 인권실태 조사'로서 100번 지적되었다. 이하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지적건수)

- ① 인권상황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및 국가기관과의 협조체제 수립(69)
- ⑥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65)
- ② 군대내 인권실태 조사(57)
- ⑧ 인권침해의 기준 및 예방을 위한 일반지침의 제정(45)
- ③ 차별행위 실태조사 (42)
- ⑨ 빈곤층의 생활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40)
- ①7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33)
- ④ 법집행공직자 인권교육 (28)
- ①2 외국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27)
- ①0 각 분야별 인권지수의 개발(14)
- ①5 국민 기초생활 보장실태 조사(12)
- ⑤ 학교내 인권실태 조사 및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18)

⑬ 국내외 인권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⑦ 새로 제정되는 법령에 대한 조사와 연구(3)

⑭ 재소자, 외국인 등 특수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⑯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1)

(2) 위 내용 이외 위원회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인권현안이나 해야 할 활동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설문 5-2>에 28인이 인권교육, 인권백서, 호주제 철폐, 여성장애인 인권침해실태조사와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III에 수록)

6. 설립준비난항으로 법정설립일(2001.11.25)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할 상황에 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인권위원의 임명과 부속법령의 제정, 직원의 임명 등 준비를 거쳐 11월 25일에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인권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월 25일까지 설립준비작업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6에 응답자 40인(85.1%)의 응답빈도 1순위는 27인(67.5%)이 제시한 '② 인권위원이 임명될 후 정상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활동을 시작하되 11월 25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었다. 반면, '①어떻게 해서라도 11월 25일에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인이 찬성하였다.

7.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정부의 논란에 대한 대응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7에 응답자 36인(76.6%)의 응답빈도 1순위는 "② 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따라 위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확보한 다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었다(24인 응답, 66.7%). 반면, “①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의 최소한의 조직과 정원으로 일단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명(14.9%)만이 응답하였다.

8.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위원회와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으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설문 8>에 응답자 27인(57.4%)의 응답빈도 1순위는 시민인권단체와의 상시 협의, 연대회의의 정례화, 의견수렴(12인 응답)이었다. 2순위는 인권침해조사·구제와 인권교육 등 시민단체와의 공동대응(6인 응답), 3순위는 정보공개와 공유(5인 응답), 4순위는 인권활동가의 참여(4인 응답)이었다.(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III에 수록)

9. 기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제안

그밖에 기획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설문 9>에 27인(57.4%)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III에 수록).

III. 설문문항별 응답결과분석

1. 다수인보호시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하는 대상으로 다수인보호시설을 들면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1, 2, 3 시설종류

<설문 1-1> 아래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생활시설 ③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④ 모자복지시설 ⑤ 부랑인보호시설 ⑥ 노인주거복지시설 ⑦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⑧ 청소년보호시설 ⑨ 가정폭력보호시설 ⑩ 외국인보호실 ⑪ 갱생보호시설 ⑫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응답>

- 응답자수 : 47인(100.0%)
- “없다”(21인 : 44.7%), “있다” (9인 : 19.1%), 무응답(17인 : 36.2%)
- “있다” 응답이 지적한 시설 순위(빈도)
- 1순위 : ④ 모자복지시설 (5)
- 2순위 : ⑨ 가정폭력보호시설 ⑫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⑦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각 3)
- 3순위 : ⑧ 청소년보호시설 ⑩ 외국인보호실 (각 2)
- 기 타 : ①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생활시설 ③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⑥노인주거복지시설 ⑪ 갱생보호시설 (각 1)

<설문 1-2> 위의 1-1 질문에 대하여 해당항목을 선택하셨다면, 그 해당항목이 다수인보호시설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1,2,4,6,7번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추진되어 왔으며 인권보장이 개선되면 부수적으로 향상될 것이므로.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7번 - 북한 이탈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중요하기는 하나 사안의 성격상 국가인권위가 담당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음. 단 그분들이 유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

⑭(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 4, 9, 12번 - 다른 다수인 보호 시설에 비해 인권 침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인권 침해 제보시 조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어야 함.

⑮(생명의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10번 - 다수인이 아니라 상황에 틀려지는 경우

⑯(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3,4,7,10,12번 - 위 선택항목의 보호시설은 정부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이기 때문

⑰(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4번 -모자는 부모지간 혈육으로 가족이고 또 친권자이기에

⑱(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정미정 사무처장) 8, 9, 11번 -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향상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같아서

⑲(동아일보 정현상 기자) 4번 - 인권침해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므로

<설문 1-3> 위 내용 이외 다수인보호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자 : 20인(42.6%)

응답빈도 :

1순위(7) : 고아원

2순위(5) : 이주노동자 관련시설, 부랑인보호시설

3순위(4) : 윤락여성보호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양로원, 기도원

4순위(3) : 교도소, 노숙자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정신병원, 청소년 보호시설

5순위(2) : 군대, 병원

- 기타(1) : ◦ 주간보호시설이나 임시보호시설
- 국가정보기관, 공권력행사기관
 - 국공립의 각종학교(특히 기숙사의 경우), 각종 훈련소(태릉선수촌, 직업훈련소 등)
 - 성적소수자 보호시설,
 - 에이즈 환자 등 전염병 환자 보호시설
 - 구치소
 - 알콜중독 치료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보호시설
 - 농성장, 시위 및 진압현장
 - 재개발 철거현장
 - 출입국 심사장
 - 난민 보호소 등
 -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단기 대피소 시설
 - 국정원 및 국군보안사령부 등에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사실상의 구금시설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임시외국인 보호시설
 -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법원 검찰청의 구금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개별응답자의 의견

-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장애인 미신고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등
-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주간보호시설이나 임시보호시설
-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윤락여성보호시설
-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교도소시설, 국가정보기관, 공권력행사기관

-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노숙자보호시설
-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공립의 각종학교(특히 기숙사의 경우), 각종 훈련소(태릉선수촌, 직업훈련소 등), 기타 다수집합장소로서 일정한 기율에 의하여 관리되는 곳
-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공권력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생존권 보장 = 부정부패추방
- ⑫(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윤법달 부장) 미혼모등의 여성 인권 시설
-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복지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설 보호시설 - 고아원, 개생원 등
- ⑭(민중의료연합 박균배) 이주노동자 집단 주거 지역, 장애가구
- ⑮(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 아동, 장애인, 부랑인, 외국인은 사회적인 약자로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유린을 보호시설에서 받은 경우가 많아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 임
- ⑯(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 성적소수자 보호시설, 윤락여성 보호시설, 에이즈 환자 등 전염병 환자 보호시설
- ⑰(생명의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고아원
- ⑱(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구치소, 교도소
- ㉒(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소위 부랑인을 대하는 각급 행정관청이 운영(위탁)하는 곳
- ㉓(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부랑인보호시설
- ㉔(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 미혼모, 실직자 등
- ㉕(민가협 '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소년법상 위탁시설, 윤락행위방지법상 보호시설
- ㉖(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일반병원, 군대
- ㉗(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 군대, 경찰 등 다수가 근무-생활하는 국가시설도 어느 범주에 넣든 국가인권위 감시-조사대상에 들어가야 할 듯)

<설문1-3 > 다음 사항 중 다수인보호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써 법령에 의거해 설치된 시설
- ②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써 법령에 의거, 설치된 시설은 아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

<응답>

응답자 : 25인(53.2%)

응답 빈도 :

1순위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11인, 44.0%)

2순위 “없다” (14인, 29.8%)

1-4, 5 시설여부 판단기준

<설문 1-4> 위 내용 이외,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자 : 15인(31.9%)

개별응답자 의견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데 의견일치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마땅히 갈 곳이 없는 2인 이상의 사람을 보호하며, 1인 혹은 그 이상의 관리인이 시설소장 또는 보호자로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

되, 일정한 기율에 의하여 관리되고 그 기율에 따른 사실상의 강제력이 행사되는 시설 -개방적 영조물의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사적 시설 또한 포함되어야 함. 즉, 널리 외부와 사실상의 단절된 공간(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에서 억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면 족함.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다수의 극빈자 및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로 하여금 일터로 제공되는 시설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집단수용시설

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광배희 소장) 2인 이상의 사람이 수용된 장소로서 공간적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자 또는 관리자의 사실상 지휘와 관리를 받으며 수용자가 그 영향권내에 있을 경우(보호·수용된 기간이나 시간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일시적 체류 및 거처로 제공되는 곳 등도 이에 해당함). 시설 수용자의 의사전달, 왕래 및 행동에 있어서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집단에 수용된 경우

⑮(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평화의집 김주철 소장) 공익과 인권을 위한 시설인지여부 판단

⑯(한국정치연구회 오현철 연구위원) 2인 이상의 국가권력과 사회로부터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국공립. 사립 불문)

⑰(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행형법이 적용되는 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행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곳

가. 국정원 및 국군보안사령부 등에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사실상의 구금시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임시외국인 보호시설

다.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법원 검찰청의 구금시설

라. 소년원법에 의해서 경미한 죄를 범한 아동을 임시 위탁하고 있는 보호시설

마. 소년보호관찰소

바. 병원 위탁소 및 요양소

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아. 윤락행위방지법상의 부녀보호시설

자.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시설

차. 기타 개인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보호시설

㉔(천주교 수원교구 안영 전·진·상 복지관) 사회보호법 제1장 제2조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의 대상자의 시설 및 공설의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수해대상자

㉕(인권정보센터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상범) 공공시설로서 그 주무관리처가 관이거나 종교 자선, 의료 및 기타 사회단체의 시설물로서 다수인을 수용관리하는 시설. 종교단체의 신도 수용시설도 사실상 외부와의 통제를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

㉖(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가에서 설립한 다수인보호시설 이외에도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㉗(국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산하 모든 수용시설, 사설 수용시설(기도원 등)

㉘(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사적인 단체지만 법적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

㉙(동아일보 정현상 기자) 다수의 사람에게 보호수용을 강제하는 시설

㉚(조지메이슨대 갈등문제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슈화된 시설

2.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2-1, 2 효율적 방문조사방법과 절차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6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2-1> 아래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방문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담아야 할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 내 면담장소 제공
- ②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 방해 금지
- ③ 면담한 수용자나 시설의 직원이 면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받지 않을 권리 명시
- ④ 수용자 및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제반 자료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 명시
- ⑤ 수용자 및 시설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시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등 조사기록의 작성과 보관

<응답>

중요순서에 따라 가중치 부여(1순위 : 5점, 2순위 : 4점, 3순위 : 3점, 4순위 : 2점, 1순위 : 1점)

1순위 : ③ 면담한 수용자나 시설의 직원이 면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받지 않을 권리 명시(138)

2순위 : ②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 방해 금지(137)

3순위 : ④ 수용자 및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제반 자료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 명시(128)

4순위 : 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 내 면담장소 제공(101)

5순위 : ⑤ 수용자 및 시설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시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등 조사기록의 작성과 보관(75)

<설문2-2> 위 내용 이외에 효율적인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자 수 : 30인(63.8%)

응답빈도

1순위 : 사전예고없는 방문조사(11)

2순위 : 조사관의 수용자 직접 면담(직원 입회 불허) (5)

3순위 : 조사거부시 제재조치(3)

4순위 : ◦ 관계단체, 전문가의 동행, ◦ 피조사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재제 (각 2)

응답의견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있을 법한 자료나 정보를 전해주지 않을 경우의 대책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방문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없이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면담수용자에 대한 사후 보호관리프로그램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수용자 및 시설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 규정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사전통보 없이 방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용보호 시설을 아무런 제약없이 방문해야 한다.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제요청자 혹은 면담요청자로서 당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경우 원하는 때에는 다른 시설로 이전시키거나 특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일종의 미국식의 증인보호장치가 확보되어야 함.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정부 조사원의 수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불특정 시민단체 참여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수용자 및 시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명시

⑫(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윤법달 부장) 방문 조사기관과 관련된 검찰직원

등 동행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국가인권위의 제반 활동에 있어 담당 조사관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위상이 담보)

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 1) 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용시설에 사전통보 없이도 방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
- 2) 수용시설에 있는 집기(전화, 팩스, 이메일, 컴퓨터 등 비품)에 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함
- 3) 시설 내에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
- 4) 시설기관의 도청, 녹음, 촬영이 불가능한 장소 제공
- 5) 면담시 수용자시설에서 제공한 의복이 아닌 자유복장 착용, 수갑 해제 등의 자유로운 여건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6) 조사 전에 진정인에게 충분한 수면,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7) 조사전후해서 일상적 일정 외의 특별한 일정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8) 소속직원의 일상적인 면담 외의 특별 사전면담 금지-심리적 위축으로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
- 9) 필요할 경우 수용시설 밖에서의 조사도 가능하게 할 것
- 10) 시설에 접근가능한 통로에 대한 방해 배제(자동차 통행, 주차장 제공)
- 11) 조사기일 및 시간에 고의로 소속공무원이 외출하거나 해당 수용시설 일정 등을 이유로 면담을 못하게 해서는 안됨
- 12) 위원회의 조사시에는 녹음,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⑮(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정송기 교권법규국장) 사전 예고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명시

⑯(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방문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방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⑰(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평화의집 김주철 소장) 방문자 조사의 태도와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

⑱(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 1) 면담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 규정 명시. 2)합리적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수용시설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수용자와 면담하거나, 수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㉑(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 인권 침해 제보시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특별수사관과 동행하여 초기 증거 확보 필요

㉒(한국정치연구회 오현철 연구위원) '효율적으로 방문한다'고 할 때의 효율성이란, 구금시설의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인권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인권보호의 긴급성 및 정당성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인권위원회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해당시설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2) 해당시설의 장이 방문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시하도록 강제하며, 3) 같은 이유로 두 번째 방문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4) 어떠한 이유로도(서면으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도) 세 번째 방문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5) 이를 어길시에는 자동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의 장을 대통령에게 해임권고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6) 대통령이 해임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국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㉓(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6항과 관련하여

가. 위원 및 변호인 등이 구금시설을 방문시 시설 수용자가 진정의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6항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때 외국인의 경우 통역 가능자를,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전달 보조자(수화 가능자 등)를 대동하여 조사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㉔(천주교 수원교구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세실리아관장)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시와 같은 절차로 하여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㉕(인권정보센터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상범) 인권법 24조 6항의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세칙사항은 1) 방문조사의 결정과 그 대상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정식 통고. 2)

위 통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와 제반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 3)조사방문시에 조사관의 조사사항의 특정과 그에 대한 관계 기관에 대한 통고와 조사관의 신분 확인과 조사절차의 세부 요령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 영장집행처럼 요식절차의 요건과 형식을 갖추되, 조사자의 조사권에 대한 보장과 피조사자인 시설관리자의 책무와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배려하여야 할 것임.

㉞(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혜성) 1)보호시설에 대해 항상적, 수시적 필요에 따라 방문 보장. 2)특별한 보호시설의 경우 관계 전문가, 관련단체의 인물을 대동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다. 3)수용자를 면회, 면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함.

㉟(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구금보호시설의 장이 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함.

㊱(열린사회시민연합 이종철 간사)참관인이 없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㊲(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관련부서의 전담인력 배치

㊳(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필요시 구금, 보호시설 관리인의 입회 금지

㊴(남북나눔운동 김정민 교육국장) 경찰권의 보호

㊵(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 불시에 찾아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사하는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함.

㊶(민가협 '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사건당사자나 사건을 알고 있는 수용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진술자나 조사관이 입회하고 있는 시설 관련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㊷(민가협 '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사건접수시 시설내의 방문조사를 당해 관청에 사전 연락없이 곧바로 방문조사

㊸(동아일보 신동아 육성철 기자) 방문조사 방해나 기피에 대한 제재조치 및 허위 사실 증언 대한 대처방안

㊹(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 1).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 2) 시설 관계자가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거나 또는 수용자의 진술내용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의 처벌조항

3.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7항은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1, 2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보장방법

<설문3-1>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담아야 할 내용 중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시설 내 진정함 설치 및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편의 보장
- ② 시설 내에 설치된 전화나 팩스로 수용자가 진정 또는 상담
- ③ 신입수용자에게 진정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시설의 장이 고지할 의무조항
- ④ 시설의 장은 매일 지정된 시각에 수용자의 진정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여 위원회 송부
- ⑤ 진정의 내용에 대한 비밀권 보장
- ⑥ 위원회가 방문하여 진정 접수한 경우 진정인과 관계자의 신체·시설 및 관련 물건 조사 및 관계자 면담 보장

<응답> 가중치 부여

응답순위(빈도)

1순위 : ⑤ 진정의 내용에 대한 비밀권 보장 (183)

2순위 : ⑥ 위원회가 방문하여 진정 접수한 경우 진정인과 관계자의 신체·시설 및 관련 물건 조사 및 관계자 면담 보장(135)

3순위 : ② 시설 내에 설치된 전화나 팩스로 수용자가 진정 또는 상담(133)

4순위 : ③ 신입수용자에게 진정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시설의 장이 고지할 의
무조항(124)

5순위 : ① 시설 내 진정함 설치 및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편의 보장(113)

6순위 : ④ 시설의 장은 매일 지정된 시각에 수용자의 진정이 있는지 여부 확인
하여 위원회 송부(77)

기타 : 동일하게 취급/진정시 집필요청시 징벌, 또는 조사자라도 집필 허용. 전화,
팩스진정은 정보노출로 인한 불이익 받을 수 있다.

<설문 3-2> 위 내용 이외에 혹은 위 내용들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
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자 : 31인(66.0%)

응답빈도

1순위 : 수용자의 자유접견통신허용(E-MAIL, 진정서 열람제한. 핫라인 전화)(14)

2순위 : 시설관계자의 자유진정권 침해시 제재(5)

3순위 : 진정서 작성을 위한 공간 마련(3)

4순위 : 수용자에 대한 진정권에 관한 고지, 가족과 지인의 진정대리(2)

개별응답의견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들의 경우: 정신지체, 정신질환, 자폐자에 대해 자원활동가, 제3자 등이 대신할 수
있는지...내부고발이 보장되는지.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가족과의 자유로운 접촉권, 우편으로 자유
롭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시설의 장 내지 시설관계자가 진
정서에 대한 사전 열람 제한, 수용자의 진정을 위한 직통전화 개설 및 비밀 보장,
진정사항에 대한 민간단체 회람을 통한 집행 투명성 확보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문맹자를 위한 특별조치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외부와의 자유로운 접견 통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당해 시설과 교류할 수 있는 외부단체(시민단체, 학교 등)와의 연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임. 또한 외부컴퓨터통신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임.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보복금지에 대한 규정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시설의 장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사항

⑫(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윤법달 부장) 컴퓨터 이용가능한 곳에서의 이메일을 통한 진정 접수, 컴퓨터의 자유로운 사용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진단서, 증언자 증언 내용 등)에 대한 보장

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광배희 소장)

- 1) 수용시설에서 수용자에게 필기 도구 제공 및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집기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개별 공간 제공
- 2) 진정함 설치 및 그 관리에 있어서 진정자와 그 내용에 대해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3) 진정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진정서 제출 및 혹은 진정의사를 밝힐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 면회자 및 기타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에 진정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 강구
- 4) 허위진정죄에 대한 수사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진정방해 배제하도록 함

⑮(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평화의집 김주철 소장) 수시로 위원회가 방문하여 자유롭게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

⑯(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 필기도구 사용을 완전 보장하거나,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⑰(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위원회 차원에서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이나 간

부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 상담 고충 접수 해결 노력

㉔(한국정치연구회 오현철 연구위원)

- 1) 먼저 개인적 작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수용인의 통신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경우에도,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내는 편지, 팩스, 이메일, 전화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피수용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에 인권위원회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장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두 번째, 인권위원회 인력이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수거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근무자들의 간섭이나 참관을 불허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 해당시설의 장을 강제적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㉕(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8항과 관련하여

- 1) 수용시설에 수용시 수용인에게 관련 법률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음과 진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규정과 인권침해시 사법상 구제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이때 관련 서류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교부해야 한다).
- 2) 외국인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번역, 통역 및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3) 수용인이 시설의 장의 사전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진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즉시 그 장소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 보호수용시설에 있는 자가 제3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송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은 1항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㉖(천주교 수원교구 안양 전·진·상복지관/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세실리아

관장)구금보호시설에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진정내용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할 시, 시설 수용자는 법원 및 검찰 등에 자료 등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내용의 입증을 위하여 시설 수용자가 법원 및 검찰 등에 등사요청한 자료에 대한 등사의 가.부를 즉시 시설수용자에게 통보할 것이며 등사가 불가할 때는 그에 대한 사유를 시설수용자에게 통보한다.

시설수용자가 자유로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수용자에게 진정서에 대한 처리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공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진정서처리 기관에 대한 안내를 할 의무가 수용시설에 있음을 공공의 장소에 고지하여 시설수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 등은 그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명분을 내세워 통제자가 사전에 검사하여서는 안된다.

㉕(인권정보센터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상범) 31조 7항에서 정한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제출의 자유보장을 위한 조치는 우선 시설관리자의 시설수용자에 대한 자유제한의 한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수인일지라도 자기 고충에 대한 진정이나 고충 사정청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인권위원회에 시설수용자가 고충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접견과 면담 및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에게 통신과 접견의 기회를 보장토록 의무화하고 나아가서 인권위가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 이외에 보호자나 가족 기타 친지나 우인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접견주선이나 요구가 인권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된 본인 이외의 관계자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의 의견이 수용자의 처지를 대변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㉖(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해성) 1) 보호시설내 방마다 인권위원회 법령의 게시 및 방법을 자세히 안내. 2) 보호시설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3)규정 위반시 처벌규정의 명시 및 게시 4) 시설 보호 입소시 통보의 의무 명시

㉗(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시설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사전에 검열하거나 전달을 방해할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함.

- 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무고라든지 진정서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㉙(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진정서
- ㉚(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수화기를 들면 인권위 상담실로 연결되는 수용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장치, 전화
- ㉛(열린사회시민연합 이종철 간사) 반드시 답장이 와야 한다.
- 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진정서 양식 비치 필요
- ㉝(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진정서 관리 및 제출과정을 위원회에서 직접 관리
- ㉞(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자유로운 통신권
- ㉟(민가협 '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행형법상 징벌 조사 기간 중 또는 징벌기간 중 서신 접견등이 안됨으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핫 라인 설치. 고지외에 방에 부착
- ㊱(민가협 '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진정서 작성시 무조건 집필 허용
- ㊲(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정기적으로 00인 이상 표본 조사 실시
- ㊳(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준석 간사)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기타 지인(知人)에 의한 진정서의 대리작성 및 제출의 보장
- ㊴(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위 의무를 어길 경우의 처벌조항 또는 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지 시설장이 설명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

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1 사무처의 조직과 인원

<설문 4-1>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을 연구, 조사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을 권고하여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조사를 통한 인권상황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는 어떤 조직과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자수 : 25인(53.2%)

응답빈도

1순위 : 시민단체인권활동가의 직원채용(9)

2순위 : 연구·교육부서와 전문인력 확보(5)

3순위 :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부서/협의체(3)

개별응답의견 :

①(한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장애인쪽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자유권, 사회권, 장애유형과 정도에 대한 이해, 시설문제, 장애인권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임. 조직구성에 대한 상이 없어 필요인원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정책개발부: 각 영역별로 최소 3명씩 이상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 정치, 사회복지, 법률 등 각계의 연구진이 필요함.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인권상황실, 인권향상협의위원회,

인권관련사항에 대한 공개적인 상황 제시와 민간인권단체와의 상시적 협의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진정한 인권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상황실과 인권향상협의위원회에는 전문인권연구가, 인권운동가, 시민운동과견활동가가 포함되어야 함.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시민단체 인권활동가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대외협력국, 조사국, 연구국 등 사무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자부나 법무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출신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위원회 내부에서 인권상황을 연구하고 보호장치들을 개발하는 인력 및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원회 외부의 인권기관·연구기관들을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임. 이렇게 될 때 위원회 내부의 연구인력·시설은 이 외부 연구·개발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연계지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조사 유경력자, 수용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단체 실무자, 실제 수용자 경험을 한 자 중 선발된 자.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해당 준비위가 가장 잘 알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경우 주어진 자료에 허점이 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탐문조사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⑫(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윤법달 부장) 구성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무시할수는 없지만 조직의 상부는 정부나 기타 관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할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할 것이며 실무선은 이런 일에 밝은 인권단체 실무자들이 함께 할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조직과 규모는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인원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인권위 운용예산이 일반예산처럼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인권관련 예산은 일반 예산에 우선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부처만 하는 것인지 광역단위에도 노동위 처럼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일수 없으나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인원은 필요

할 것이라 본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고소 고발 등 진정건이 최고로 많은 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국민들이 구제신청을 할 것이다.

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광배희 소장)

- 1) 위원회에 진정 및 조사대상이 된 인권 및 차별사안이 다른 관계부처의 소관업무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등)와 중복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부처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 사무국에 대외협력국을 설치하여 민간단체 등과 활발한 정보교류 및 업무추진 협력
- 3) 가족법 및 가정내 남녀차별 등 인권사안에 대한 법률구조는 민간단체인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4) 조정위원 위촉시 여성인권 관련 법률구조기관(예컨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위원 위촉
- 5)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민간 및 인권단체들에 의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6)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위원 등의 영리활동 제한
- 7) 위원회의 이름으로 각종 법률행위 및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8) 위원 등의 형사 및 민사상 면책 특권 부여 및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닌 확정판결로서만 강제퇴직토록 함
- 9) 위원회로부터 이행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위원회에 이행계획 및 이행과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10) 위원회의 재정 독립 및 위원의 직무독립성 보장 및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 부과
- 11) 위원회에서 증인 선서 후 증언요구, 거짓 증언,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한 위증죄 및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⑮(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평화의집 김주철 소장)국제법과 국제인권관련단체에 관련있는 인사: 상임, 국내 시민단체 관련인사 :비상임 등

⑯(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조직 책임자는 반드시 지난 시기 인권신장

활동에 헌신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

독재정권 시절 권력집단에 의해 행해진 인권탄압 사례를 조사하여 그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사활동 및 연구를 하는 단위 필요

㉑(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인권전문가와 인권시민단체 출신 인사, 인권 침해 조사수사관들과 인권에 대해 열의가 있는 실무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㉒(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

㉓(생명의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교육부분, 행정부분, 법(변호사 등) 부분의 전문가

㉔(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독립적인 조직기구로 조사인원과 심의위원 및 사무처 요원

㉕(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 가능한 적정인원이 꼭 필요하다. 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판과 견제기구가 필요하다.

㉖(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인권, 노동, 사회, 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및 대외협의조직

㉗(남북나눔운동 김정민 교육국장) 민간조직과 공무원 기타

㉘(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 인권보호협회와 같은 기본권과 관계되는 조직

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해외 인권 선진국(?) 비교 조사 담당 부서

㉚(동아일보 정현상 기자)사무처장, 사무국(국원은 보호시설 등 실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뒤야 함), 지방위원회 등

㉛(동아일보 신동아 육성철 기자)업무량과 효율성 고려해야

4-2 인권연구와 교육, 홍보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직제

< 설문 4-2>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행자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자 수 : 24인(51.1%)

응답빈도

1순위 : 인권시민단체의 연구교육활동경험자의 참여(11)

2순위 : 인력의 전문성(6)

3순위 : 교육원의 설치(2)

응답의견 :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인권교육 연구, 장애인권교육의 첫 단계인 장애체험을 학년별 혹은 유치원, 초등, 중고등 담당이 있어야 하며, 이를 교육할 강사진의 교육 및 강의 교재, 기자재 준비 등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함. 필요인원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음.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기존의 인권기관(시민단체 포함)에서 교육경험이나 현장경험 있는 사람 포함해야.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등과 같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현장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함.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교육원을 별도로 두어 인권위원회 활동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직은 개방적 협의체, 정원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인권 및 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단 인권에 있어선 기존 시민단체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인권관련 활동을 하신 분들로 구성된 강사뱅크운영과 필요하다면 자체 연구인력을 보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역시 위원회가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외부기관들에 outsourcing의 방법으로 용역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임 - 위원회의 역량은 첫째, 인권침해의 예방과 감시, 교정에 집중되어야 하며, 교육·홍보의 부분은 외부의 연구·교육기관, 인권단체, 시민단체, 또는 각종의 연수·훈련과정 등을 적절하게 네트워킹하여 처리하면 됨.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해당 공무원의 청탁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봉급보장과 제도적 장치,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인적 구성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권교육이라기보다는 인권교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지식전문가보다는 인권운동가들의 비중을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우리 사회의 생생한 인권탄압의 사례를 체득하고 있는 분들이 책임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⑫(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윤법달 부장) 무엇보다도 전문성이겠지요 정부의 힘으로 시작되는 위원회이지만 일선 인권단체의 전문성에 버금가는 전문적인 경험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⑬(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인권교육의 경험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⑭(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평회의집 김주철 소장)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실무자 중에서 선발한 분들과 국가기관에서 관련을 일한 공무원들을 먼저 인권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 후 이들을 통한 각개각층에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됨.

⑮(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 민간 인권 시민단체 우선의 원칙으로 행정 관료에 의해 인권이 행정에 의해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다른 위원회 조직에서 시민단체 인사들이 관료들의 반발에 의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 인권에 대해 관심도 없는 관료가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⑯(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조직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원은 추진위에서 결정하되 전문가 풀과 자원활동가도 고려할 수 있을 듯.

⑰(생명의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원)을 뽑아야 함

- ㉓(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인권과 관련된 부서의 민원을 적절히 조사하여 공명정대한 심의를 하여 고발하는 것
- ㉔(외국인 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교육, 홍보, 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여론에 대한 개방성
- ㉕(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지나치게 전문가에게만 치중하지 말고 비전문가와 연계도 중요
- ㉖(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 원만한 대인관계와 봉사정신
- ㉗(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인권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편입 담당 부서 있었으면 함
- 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준석 간사) 관련 부서의 인권관련 담당자의 위원회 참여, 혹은 민간의 참여
- ㉙(동아일보 정현상 기자) 여타 기관의 인원수 대비
- ㉚(동아일보 신동아 육성철 기자) 너무 폭을 늘리지 않았으면 한다
- ㉛(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 우수한 연구-교육인력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직위와 인원 보장

4-3 인권침해와 차별의 조사·구제

<설문4-3 >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조정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고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행위도 조사하여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4-3-1 진정대상 인권침해의 유형

<설문4-3-1> 위원회에 가장 많이 제기될 인권침해의 유형은 어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응답>

응답자 수 : 30인(63.8%)

응답빈도

1순위 : 수사기관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12)

2순위 : 성차별·성희롱(6)

3순위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4)

4순위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군대폭력/ 성폭력/폭력행위 (각 3)

응답의견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침해:방치 및 학대, 열악한 환경, 노역 등/장애에 대한 비하발언/장애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기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남녀차별사례, 외국인노동자 인권, 성폭력 및 성매매

③ (열린사회 서대문, 마포시민회 박운기 정책기획부장) 여성차별

④(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구타, 폭력, 고문, 언론의 자유 침해, 불법 연행 및 감금 등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불법사찰,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보안법, 노동법 등에 관련된 사상, 시국사안, 국가 부패 매커니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권탄압문제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성, 학력, 장애인과 같은 차별 문제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직장·고용상의 평등침해의 문제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수감자에 대한 편파적 처우, 생존권과 관련된 각종 민원 무성의 처리